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81

발의연월일: 2022. 1. 19.

발 의 자:이원욱·강득구·고영인

고용진 · 김철민 · 백혜련

변재일 • 서영교 • 소병철

양정숙・양향자・장경태

전용기 · 정필모 · 조승래

홍익표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천문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색으로 표기하는 등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월력요항(月曆要項)'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및 대통령령인「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어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의 '4·3희생자추념일'과 광주광역시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천문법」상 달력의 표기기준인 '월력요항'에 등재되었으나 관공서의 공휴일과 달리 색깔 또는 구분 표기 방식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달력제작업체 등이 지방공휴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천문법」상 지방공휴일도 구분 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월력요항'에서 지방공휴일의 구분표기 방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민이 지방공휴일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방공휴일 시행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6호, 제5조제3항).

법률 제 호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기념일"을 "지방공휴일(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념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국민이"를 "적색으로 표기하고, 지방공휴일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등 국민이"로, "적색으로 표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휴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행하는 관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	6
휴일, <u>기념일</u> , 24절기 등의	<u>지방공휴일(지방자치</u>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
말한다.	여 조례로 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천문역법) ①・② (생 략)	<u>이하 같다), 기념일</u> . 제5조(천문역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
관공서의 공휴일을 <u>국민이</u> 명	<u></u> 적색으로 표기하
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u>적색</u>	고, 지방공휴일을 구분하여 표
으로 표기하는 등 대통령령으	<u>기하는 등 국민이대통령령</u>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	<u>으로</u>
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	
야 한다.	